

01

회원정보 수정 및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안내

회원정보 수정안내

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우측 회원정보에서 로그인 후 [마이페이지]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서 자택주소, 전화번호, 비밀번호 등을 수정하면 실시간으로 협회 전산망에 반영되며, 공인인증서 등록, 전자민원, 발급동의,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☞ 자택주소 등 변경시 회원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협회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원 [전자민원] 서비스 이용안내

■ 전자민원 서비스 종류

- 회비 · 경력관리 수수료 납부 및 미납내역 조회
- 각종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(경력사항, 경력등급,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내역, 설계 · 감리 · 대행업체 기술인력 등록내역, 감리원 배치신고 내역 등)
- 각종 민원서류 발급(경력확인서, 보유확인서 등)
- 교육신청 및 이수현황 조회
- 발급서류 원본확인 서비스(보증서, 확인서, 계산서 발급)

■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방법

- 정상회원 및 경력관리 수수료를 완납한 전력기술인에 대하여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
- 반드시 초기화면에서 공인인증서(금융기관 발급)로 로그인 후에 전자민원서비스의 이용 가능(초기에 회원ID, 패스워드로 Log-in 한 경우 이용이 불가함으로 Log-out 후 사용)
- 각종 민원서류 발급(경력확인서, 보유확인서 등)
 - ☞ 신청 ⇒ 조회 ⇒ 결재(발급시 : “결재내용”을 보여줌) ⇒ 결재방식 선택(신용카드, 계좌이체) ⇒ (확인서 발급) ⇒ 사용가능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에서 확인서 출력※ 프린터 오류 등으로 인쇄가 안된 경우에는 Log-out 후 재부팅 사용
- “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” 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, “감리원 경력확인서” 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발급됨
 - ★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[전자민원] “전자민원 이용안내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경력신고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

- 신고서류(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)
 - 경력신고서 (별지 제4호 서식)/(최초 신고자에 한함)
- 첨부서류(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및 운영요령 제40조 규정)
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(해당자에 한함)



-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)
- 경력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/참여사업명 등록 시(해당자에 한함)
 - ★경력확인서는 발행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하고 확인 날인함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종류) 앞, 뒤 사본
- 주민등록초본(군 경력 및 복무기간 확인용)
- 기타 상환 및 교육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사진 4매(3x4)[신고서, 경력수첩, 감리원수첩, 설계사면허증(기사2년, 산업기사5년이상 경력자에 한하며 기능사·기능장은 대상에서 제외)]
- 증명서류 (재직, 경력, 참여사업)
 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중 1종류
 - 참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6호서식 제출 경우)
 - 설계경력 참여사업명은 용역수행현황확인서 등 첨부(해당자에 한함)
 - 증명서류 : 용역계약서, 실적증명서, 배치확인서, 참여기술자 현황 등
- 발급 수수료
 - 경력 수첩 : 13,000원
 - 감리원수첩 : 13,000원
 - 설계사면허증 : 10,000원
 - 수수료는 현금 또는 우편 소액환으로 납부
- 접수방법
 - 회원가입 : 회원가입원서,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(최초 신고자에 한함)
 - 접수장소 : 중앙회 및 부산시회, 광주시전남도회(등급변경, 재발급만 가능)
 - 접수방법 및 소요기간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, 접수 후 5일 이상 소요
 - 우편접수 시 반송우편료(2,500원) 또는 착불요금으로 발송
 - 문의처 : 중앙회(02-2182-0754~7 / 회원관리팀) 및 전국 21개 시·도회
 - ★자세한 내용 및 각종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[주요업무] "경력신고" 메뉴를 참고바랍니다.

경력 변경신고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

- 신고서류
 - 경력 변경신고서 (별지 제5호 서식)
 - ★경력 변경사항 및 경력, 학력, 교육사항 등 추가 신고자에 한함
- 첨부서류(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및 운영요령 제40조 규정)
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(해당자에 한함)
 - 국가기술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담당업무 구체적 명시/해당자에 한함)
- 경력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/참여사업명 등록 시(해당자에 한함)
 - ★경력확인서 작성은 발행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하고 확인 날인함
- 기타 상훈 및 교육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증명서류 (재직, 경력, 참여사업)
 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중 1종류
 - 참여 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6호서식 제출 시)
 - 설계경력 참여사업명은 용역수행현황확인서 등 첨부(해당자에 한함)
 - 증명서류 : 용역계약서, 실적증명서, 배치확인서, 참여기술자현황 등
- 접수방법
 - 접수장소 : 중앙회 및 전국 21개 시·도회
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 - 문의처 : 중앙회(02-2182-0755~7 / 회원관리팀) 및 전국 21개 시·도회
 - ★자세한 내용 및 각종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[주요업무]“경력신고”메뉴를 참고바랍니다.

경력 등급변경 (갱신·재발급)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

- 신고서류
 - 경력수첩, 감리원수첩, 설계사면허증(갱신·재발급)신청서 (별지 제7호 서식)/(등급변경 및 분실 재발급 경우에 한함)
 - 경력 변경신고서류(별지제5호서식 등 첨부서류)/(해당자에 한함)
- 첨부서류
 - 경력수첩, 감리원수첩, 설계사면허증 원본(신청내용 건에 한함)
 - 사진 (3x4)(사진 매수는 발급 신청건수와 동일수량)
 - 분실사유서(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) ★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신청 경우에 한함
- (재)발급 수수료
 - 경력 수첩 : 5,000원
 - 감리원수첩 : 5,000원
 - 설계사면허증 : 5,000원
 - 수수료는 현금 또는 우편 소액환으로 납부
- 접수방법
 - 접수장소 : 중앙회 및 부산사회, 광주시전남도회(등급변경, 재발급만 가능)
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(접수후 5일 이내 발급 및 발송)
 - 우편접수경우 반송우편료(2,500원) 또는 착불요금으로 발송
 - 문의처 : 중앙회(02-2182-0755~7 / 회원관리팀) 및 전국 21개 시·도회
 - ★자세한 내용 및 각종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[주요업무]“경력신고”메뉴를 참고바랍니다.



경력 신고자료 (이의·경정) 업무절차 및 구비서류

■ 신고서류

- 신고자료(이의·경정)신청서 (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)
(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·경정 신청 시)

■ 이의·경정 해당 사항

- 부, 법원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(해당자에 한함)
- 오기, 착오, 오입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
-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그밖에 증빙자료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- 본인의 삭제요청에 의한 삭제경력은 재신고 할 수 없음(서약서)

■ 첨부서류 및 증명서류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- 경력확인서(별지 제6호서식)에 의한 참여 사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
★경력확인서 작성은 소유자(대표자) 또는 발주자의 발행 및 확인한 경우
- 용역계약서, 실적증명서, 배치확인서, 용역수행현황확인서 등의 증명서류
- 기타 4대 보험(국민, 건강, 산재, 고용)등 증명서류

■ 접수방법 및 처리기간

- 접수장소 : 중앙회(시·도회에서는 처리 불가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
- 문의처 : 중앙회(02-2182-0752 / 회원관리팀) 및 전국 21개 시·도회
★자세한 내용 및 각종 서식은 협회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[주요업무]“경력신고”메뉴를 참고바랍니다.

전력기술인 설계사면허증 효력상실 공고 (2011년 3월 7일자)

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설계사면허증의 효력상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문의 : 회원관리팀 (02-2182-0751~3)

No.	성명(생년)	발급번호	No.	성명(생년)	발급번호
1	서○○(41생)	1444	8	이○○(55생)	104461
2	김○○(59생)	101088	9	신○○(63생)	104480
3	임○○(58생)	101144	10	이○○(60생)	106136
4	이○○(66생)	101217	11	박○○(67생)	106308
5	박○○(59생)	101333	12	이○○(65생)	106733
6	엄○○(79생)	101543	13	길○○(66생)	107069
7	김○○(64생)	101552	-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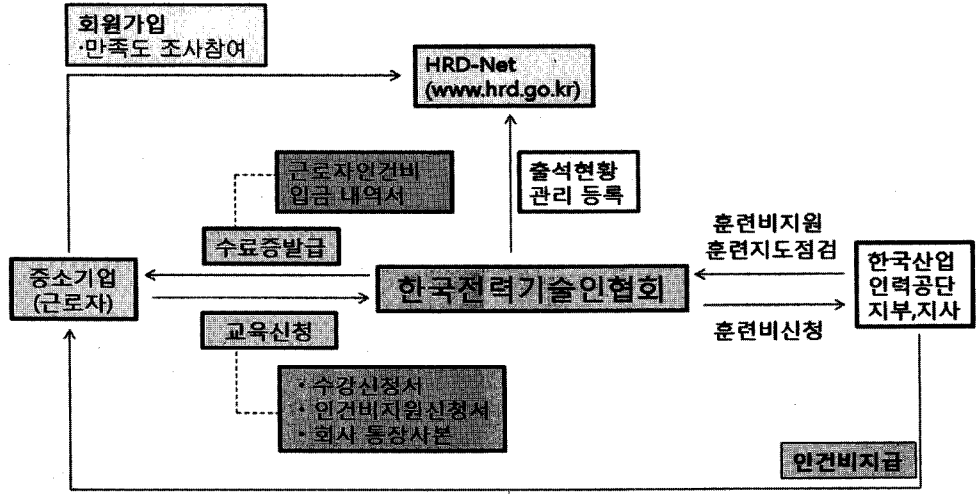
02 2011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안내

우리 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2011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우수훈련기관으로 지정(2011.03.04)받아 정부 지원을 통해 “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- **교육과정** :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과정
- **교육대상** :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서
 - 전기관련부서의 관리자 또는 실무자
 -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
- **교육시간** : 3일간 21시간(1일 7시간, 비합숙 중식제공)
- **교육비** : 76,000원(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만 가능)
- **근로자 인건비 지원금** : 90,720원(수료 후 회사로 입금)
- **일정 및 장소**

No	교육 일정	정원	교육 장소	비고
1	2011.05.31(화)~06.02(목)	30명	서울메트로 교육원(서울 성동구)	마감
2	2011.06.08(수)~06.10(금)	30명	서울메트로 교육원(서울 성동구)	
3	2011.06.21(화)~06.23(목)	30명	서울메트로 교육원(서울 성동구)	
4	2011.06.21(화)~06.23(목)	30명	대구 TP벤처공장(대구 달서구)	마감
5	2011.06.28(화)~06.30(목)	30명	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(부산 부산진구)	
6	2011.07.12(화)~07.14(목)	30명	천안축구센터(충남 천안시)	
7	2011.08.30(화)~09.01(목)	30명	군포문화예술회관(경기 군포시)	
8	2011.09.20(화)~09.22(목)	30명	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(경남 창원시)	
9	2011.09.27(화)~09.29(목)	30명	광주여성발전센터(광주 서구)	

■ 교육 참여절차



가. 직업훈련정보망[HRD-Net(<http://www.hrd.go.kr>)]에서 회원가입- 회원가입->일반인(훈련생) 선택

나. ① 홈페이지(www.keea.or.kr) 로그인 → ② 좌측 전자민원->교육신청 → ③ 공인인증 확인 후 접수

신청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송부

- 팩스번호 : 02-581-4256

- 주 소 : (151-802)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56-17 1층 기술지원팀

- 제출서류 : 수강신청서, 근로자인건비 지원신청서, 회사통장 사본

※ 계좌번호 : 우리은행 551-190998-13-022(예금주: 한국전력기술인협회)

※ 신청서류는 교육 입교 시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(우편 제출자는 제외)

■ 기타

- 사업주가 교육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수료 후 직업훈련정보망[HRD-Net(<http://www.hrd.go.kr>)]에서 수강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(미참여 시 차기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- 관련 문의 :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기술지원팀(02-2182-0772~5)



03 전력신기술 지정고시 제84호 안내



●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- 50호

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1년 3월 30일
지식경제부 장관

■ 전력신기술 지정

- 신기술명 : 구동롤러를 활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 포설공법 (기술)
- 지정번호 : 제84호
- 신기술 개발자
 - 회사명 : 선우파워텍(주) · (주)이디에스엔지니어링 · (주)유덕개발
 - 대표자 : 장진수 · 최석영 · 황정호
 - 법인등록번호 : 134611-xxxxxxx · 134811-xxxxxxx · 140111-xxxxxxx
 - 주 소 :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6-8 2층 ·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44-2 탑프라자 906 ·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253-1
- 신기술 내용 및 범위
 - 회전풀기장치와 열풍추진장치로 구성된 기계포설장비를 이용한 전력용 합성수지 파형관 기계포설공법
- 신기술 보호기간 : 지정·고시일로부터 3년

■ 신기술 보호내용

-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
 -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
 -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

※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(전화 : 02-3393-7624, 서울 중구 수표동 11-4, www.electricity.or.kr - "전력신기술")에 등록되어 있으니,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